

씨엔씨, 특허권 침해소송 승소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스마트로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씨엔씨는 서울지법이 스마트로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마트로는 지난 4월 씨엔씨측이 자사 특허인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액세스시스템과 방법'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서울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전영삼 대표이사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에 따라 전 대표는 이달 초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스마트로의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씨엔씨가 제품을 개발한 데다 씨엔씨가 스마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씨엔씨의 제품의 종래의 기술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 분명한 만큼 특허침해 주장은 근거없다"고 밝혔다.

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대표이사의 형사고발도 해제됨은 물론 스마트로가 문제를 제기한 멀티보드에 대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교통카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휴대폰결제 특허분쟁 조짐

지난 10월 국내 최초 휴대폰결제 특허를 획득한 무선인터넷 전문벤처 인포허브가 결국 경쟁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행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휴대폰 결제업체가 특허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인포허브(www.infohub.co.kr 대표 이종일)는 금명간 다날, 모빌리언스 등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를 알리는 통고서를 발송하고, 향후 특허권 행사와 관련한 협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휴대폰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유료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인포허브가 정식 특허 권리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특허권 행사에 대한 방침을 알리는 협조요청서도 동시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는 휴대폰번호와 개인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인터넷상의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로,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에 대한 특허 인정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휴대폰 결제시장은 지난해 8월 인포허브가 '와우코인'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래 다날(텔레디트), 모빌리언스(엠캐쉬), 파네즈(아이애펜이), 엠차지정보기술(엠차지) 등이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일 사장은 "이번 특허는 지금까지 인포허브가 휴대폰결제 시스템에 기울인 땀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앞으로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포허브가 특허권 행사에 들어가자, 관련 업계는 "이미 보편화된 상용기술에 대해 특허를 주장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포허브측의 특허범위가 현재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는 '건당 결제' 방식이 아닌, '선불계좌' 방식인데도, 휴대폰 결제방식 전반을 자신들의 특허범위로 억지로 규정하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의 영업전략 아니냐"며 "만약 특허권 행사와 관련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면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포허브측은 "일부 조항에 '선불계좌'에 대해 포함돼 있지만, 이번에 획득한 특허범위는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결국 이번 인포허브측의 특허권 행사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종인 스마트로 대표는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등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관련 현재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지법은 스마트로가 씨엔씨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기각판정을 내렸다.

출처 한국경제

스마트로, "특허관련 씨엔씨에 항고"

스마트카드 지불솔루션 전문업체 스마트로가 씨엔씨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기각된 특허침해 소송관련 이번 주 서울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로는 이번 소송은 단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일 뿐 스마트로의 특허권 보유에 대한 것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김해권 부장은 "서울지법 재판부가 스마트로의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씨엔씨엔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보다 현재 일반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고려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본안 소송인 손해배당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Multi-SAM(특허명 : 무선정보기록매체의 다중-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한 특허권 소유 및 지난 9월 28일 형사소송으로 씨엔씨엔터의 대표가 불구속 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을 통해 인정받은 본 소송과 별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원, 도메인 도용 자국 인터넷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중국 법원이 해외 유명업체의 도메인 이름을 도용한 중국내 인터넷 업체들에게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등 11개 다국적기업이 광저우 소재 유에징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와 베이징의 구오왕 인포메이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도메인명이 상표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표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피고측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었음이 명백하다며 10일 이내에 도메인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번에 10개 외국 업체들로부터 피소된 구오왕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1만위안(1227달러)의 배상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 이후 2000여개의 도메인을 등록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유명 브랜드로부터 따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입과 더불어 자국에 진출한 해외업체들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재판을 관할한 왕 판우 판사는 “이번 판결은 WTO 지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중국의 법률은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익도 보호한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틱애니메이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변형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커니축이 즐라맨이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스틱애니메이션에 대해 저작권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굿데이

“**즐라맨**” 저작권업체, 패러디 “**뽀녀**” 저작권 소송 경고

국내의 대표적인 스틱애니메이션 “즐라맨”과 이를 패러디한 “뽀녀”가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즐라맨” 저작권 업체인 커니 엔터테인먼트(www.dkunny.com)가 저작권 침해물 문제삼자 이름을 “웃뽀파”로 바꾸고 이미지까지 수정한 뽀녀가 또다시 커니축으로부터 인터넷에서 작품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 이에 앞서 뽀녀는 지난 7월 “즐라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으나 즐라맨을 모방했다는 커니축의 지적을 받아들여 제작 중단된 바 있다.

커니축이 “즐라겔”에 이어 “웃뽀파” 제작에 제동을 걸고 나오자 뽀녀를 제작한 두 명의 네티즌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웃뽀파”는 “즐라겔”과 달리 기존의 가르마를 댕기머리로 바꾸고 눈 각도도 45° 내렸으며 변신 후 모습도 헬멧이 아니라 가면을 쓰도록 한 창작품이라며 항변하고 있는 것. 제작자인 L씨는 “즐라맨과 뽀녀가 스틱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커니축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예 스틱

하이닉스, 램버스와 특허소송 사실상 승소

하이닉스반도체(www.hynix.com 대표 박종섭)는 미국 램버스사와 SD램 및 더블데이터레이트(DDR)SD램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미국 북부연방 지방법원이 하이닉스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려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판결은 램버스사와 독일 인피니온사간에 진행된 특허소송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램버스가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 11건 중 10건이 침해사실 없음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램버스가 제기한 나머지 1건의 특허 침해 여부와 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사기 및 반독점 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을 잠정 중지했고 앞으로 램버스가 판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할 경우 이번 소송은 램버스와 인피니온의 항소소송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됐다고 부연했다.

인피니온은 이미 올해 5월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램버스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램버스는 이 판결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한편 램버스는 작년 8월 하이닉스반도체·인피니온·마이크론을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LG필립스LCD, 대만업체 특허 침해 주장

한국과 대만 LCD 업체간 특허 로열티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필립스LCD(대표 구본준)는 대만의 LCD 패널 공급업체들에 자사의 공정기술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LG는 대만 A사와 C사가 자사 기술 보유하고 있는 '5 타입 포토마스크' 공정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허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며 자사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협상도 준비중이다. 포토마스크 공정은 유리기판위에 여러 층의 박막을 입혀 박막트랜지스터(TFT) 회로층을 형성시키기 위한 공정으로 각 회로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마스크 공정이 필요하다.

5타입 마스크는 TFT를 5번의 공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만 업체 가운데는 6타입 공정기술을 사용하는 쾨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들이 5타입 공정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업체들은 LG필립스LCD의 특허권 요구에 대해 "5타입 포토마스크 공정기술의 경우 약간의 도형과 공정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대만 TFT LCD 협회를 중심으로 특허권 요구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후지쓰 삼성전기에 특허소송 제기

삼성전기가 포르투갈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해 국내에서 100억원대의 보증금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또 미국에서도 일본 후지쓰 미디어 디바이스의 휴대전화 소음필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조소를 당했다.

포르투갈 은행인 방코커머셜 포르투게스는 서울지법에 "삼성전기가 삼성포르투갈에 해준 114억원의 지급보증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포르투갈은 지난해 현지 직원이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에 대한 선물환을 매입했다가 6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은행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방코 커머셜 포르투게스는 "삼성전기가 삼성포르투갈이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삼성전기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기는 현지 직원이 회사이름을 도용해 불법 거래를 했기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후지쓰는 이날 삼성전기가 휴대전화 소음필터 특허 2건을 침해해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후지쓰는 삼성전기가 휴대전화 잡음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SAW(Surface Acoustic Wave)필터의 회로 디자인과 리튬탄탈레이트 결정격자를 절단 각도측정 기술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후지쓰 측이 특허침해를 주장해 양사가 협의를 벌여왔으나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로슈, 특허권 분쟁패소로 10억달러 배상할듯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가 최근 유럽 연합(EU)로부터 비타민 제품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이어 미국내 자회사의 특허권 분쟁 패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소재 로슈의 자회사인 다이그노스틱스(Diagnostics)는 미국내 경쟁회사인 아이젠(IGEN)이 제소한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투자은행의 전문가인 존 푸트남은 로슈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10억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고 독일간지 타게스 안차이거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로슈는 암과 유전적 질병과 알레르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아이젠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 분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구축했으나 적절한 보상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슈는 또한 아이젠의 승인없이 제3자와의 특허침해 문제를 법정밖에서 해결함으로써 사업허가협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로슈는 주요 비타민 제조회사들과 가격담합을 주도,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EU집행위로부터 4억6천200만 유로(6억7천500만 프랑)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공연 무단녹화 인터넷방송 저작권 침해

무단으로 공연을 녹화한 뒤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VOD(Vedio On Demand)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극단 현대극장이 “공연을 무단으로 녹화,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는 바람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기독교계열의 H인터넷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을 녹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이곳에 접속한 사람들이 VOD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공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97년 12월 세계적 록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공연했던현대극장측은 H인터넷방송이 공연실황을 14개 부분으로 나누어 녹화한 뒤 같은해 12월부터다음해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VOD방식으로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매일경제

맥차이나가 맥도날드를 이겼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가 중국 음식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차이나(McChina)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맥도날드가 자사의 상징인 Mc(Mac, ~의 아들이란 뜻)을 맥차이나가 쓰고 있다며 상표권 분쟁 소송을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냈으나 패소한 것.

맥차이나는 중국인 프랭크 위관위엔이 영국에 낸 중국음식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맥도날드는

맥차이나가 맥도날드의 중국음식 패스트푸드점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런던 고등법원의 데이비드 뉴버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맥도날드가 스코틀랜드 방언으로 아들의 의미를 지니는 Mac이란 보통명사를 독점할 수는 없다”며 “맥차이나가 맥도날드의 중국음식 판매점으로 혼동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맥차이나는 지난 67년 영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프랭크 위관위엔이 지난 91년 웹블턴에 첫 음식점을 개소한 이래 영국 전역으로 퍼졌으며, 영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랭크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새우가 고래를 이긴 격”이라며 행복해 했다고.

출처 Moneytoday

무선인터넷 지적재산권 분쟁 심화

무선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이엔터컴과 만민에미디어 등 음악기획 및 제작사들은 최근 다날·야호 커뮤니케이션·텔미정보통신·오사이·인포허브 등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벨소리다운로드업체는 “이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으며 각 곡마다 다시 일일이 미디(MIDI) 작업을 통해 재가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기획사들이 저작권접권을 들먹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인포허브는 이달 중순 휴대폰결제 특허권 행사를 위한 협상을 전개하겠다는 공문을 관련업계에 보냈다. 그러나 다날 등 일부 기업은 특허출원일이 인포허브측보다 빠르고 서비스도 먼저 실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휴대폰을 이용한 숫자도메인 관련 특허도 이미 출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비스를 준비중인 관련기업간 분쟁이 우려된다.

◇ 원인과 배경=잠잠했던 무선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 무선인터넷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벨소리·휴대폰결제 등 일부나마 적지 않은 매출과 실적을 거두고 있어 지적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반대급부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미 벨소리업체인 야호·다날 등 선발업체들은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코스닥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무선분야 지적재산권 역시 권리행사가 쉽지 않고 특허를 피해가기 쉬운 비즈니스모델(BM) 특허와 저작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BM은 요소기술이 아니어서 특허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며 “권리 행사를 통한 수익창출보다는 특허분쟁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 전망과 대책=무선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유료화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비스 초기부터 일정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지적재산권 입장에서는 어떤식으로든 특허권을 행사

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2년 전에 출원된 특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 정식특허로 속속 인정되고 있어 침해 여부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분쟁이 자칫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BM특허에 대해 관련부처 및 기관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적권 행사과정에서 업체간 불협화음을 내기보다는 시장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그러나 "이제 국내 무선인터넷 벤처기업들도 기존의 잘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베끼기보다는 더욱 차별화된 모델로 승부하는 창조적 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전자신문

“SW 불법링크맨 저작권 침해”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棼 부장

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가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링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정보제공업체 넥스텔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넥스텔이 지오스테크널러지가 개발한 전자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자사 고객들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도 허락 없이 이를 다시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에 링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넥스텔 등은 이런 행위가 정보검색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지오스 측은 99년 지표상의 도로와 건물 산맥 등 지리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전자지도 개발, 판매했으나 같은 해 9월 협력업체 계약을 맺은 넥스텔이 제3자인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에 이를 링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동아일보

